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06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김동아 · 최혁진 · 임오경
황명선 · 복기왕 · 박민규
김승원 · 김교홍 · 양문석
정춘생 · 안도걸 · 조인철
여기구 의원(13인)

제안이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로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3,309조 원으로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보여주며, 고용 · 매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 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등으로 흑자도산이나 기업 매각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

명이 30년에 미치지 못하고,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토대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자문, 융자·보증 연계 등을 지원하고,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를 비롯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재불명 주식처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고용안정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세제, 인력, 판로, 능력개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 특례 및 규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피승계자”란 60세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의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중소기업을 경영한 자로서 그 소유 지분 전부를 친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승계자”란 제2호에 따른 피승계자로부터 기업승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법인, 조합 또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기업승계”란 승계자가 피승계자로부터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을 증여받고 해당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정기관을

말한다.

6. “승계지원 신청”이란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7. “승계지원 등록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기업승계 지원신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승계 지원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10년 이상 경영활동을 유지한 기업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승계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국내 중소기업 승계 실태 및 현황 파악
 2.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3.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4.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5.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사업재편 촉진 및 경영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 정책의 효과 분석
 8. 해외 각국의 승계 지원 현황 및 성과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로 중소기업 승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기업승계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기업 승계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후 사업재편을 통한 경영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3. 중소기업 승계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업 진단
 4. 중소기업 승계에 따른 용자 및 보증 연계
 5. 중소기업 승계 후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
 6. 중소기업 승계 후 사후관리 및 감독을 위한 사항
 7. 중소기업 승계 관련 경영후계자 교육 등 기업승계 교육
 8. 기업승계에 관한 제도 및 인식 개선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소기업 승계지원 등록제 및 관리

제8조(중소기업 승계지원 신청 및 등록) ①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승계에 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최근 10개년 재무제표, 최근 10개년 주주명부 등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2. 기업 지분 및 자산 이전 방법

3. 기업승계에 따른 고용·기술·거래처 승계 방안

4. 기업승계 후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성과 확대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기관에서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완료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업승계 지원의 등록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지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지원 등록을 받은 경우

2. 승계지원 등록 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승계에 대한 실질적 행위가 없는 경우

3. 승계를 통한 소유권 이전 후 5년 내에 승계자가 승계기업에 종사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승계자의 지분율이 100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승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승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7. 승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소유하는 지분의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승계에 관한 지원

제10조(중소기업 승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승계

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영·기술·회계 자문, 융자·보증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 이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 등록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승계 지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승계 관련 자문, 가치평가,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가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대상 지원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증 지원) 정부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가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대상 지원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

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투자, 유동화회
사보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연장 지원) ① 정부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활동
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 동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
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 기존에 이행한 보증에 대하여 승계지
원 등록기업의 승계에 따른 대표자 변경 및 최대주주 소유자의 변
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승계 후 사업재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
기업의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 시 제16조부터 제2
4조까지에 따른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특례 적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해당 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

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한다.

제18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 유지기간 중에만 적용한다.

제19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같은 법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같은 법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같은 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의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제20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제21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기업승계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매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인과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이견으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청구인에게 선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은 즉시 이

전된 것으로 보며, 이후 법원의 결정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22조(소재불명 주식 취득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주주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주식이 수차례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산정된 주식가격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주식이란 소재불명 등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달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 승계 영업양도 특례)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비율에 포함한다. 다만 승계자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승계 후 고용유지를 위한 경영지원

제25조(세제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등록신청을 완료하여 기업승계를 추진중이거나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인력 지원 및 특례)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등록기업의 인력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또는 제35조의5에 따른 사업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3 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판로 지원 및 특례) 중소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을 승계지원 등록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승계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업승계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9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를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및 제16조의2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본다.

제30조(규제의 신속 처리) ①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기업승계에 필요한 규제 및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이하 “중소기업 ombudsman”이라 한다)에게 해당 활동에 대하여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의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기업승계 등록기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ombudsman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의 확인 및 이행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소기업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